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 저장매체의 물리적 제출 강요 금지〉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8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4.
3. 회 부 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내부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사진·위치·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함.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공무원·직원의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72조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소유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물리적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금지하며, 제출 강요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7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제출 요구 제한) ① 공공기관은 감찰·감사·조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 등)의 물리적 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3. (생략)	<u>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한다.</u> 제72조(벌칙) ----- ----- -----. 1. <u>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강요한 자</u> 2. ~ 4. <u>(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도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법 제15조제1항제1호),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16조제2항).

□ 한편, 최근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추진된 12·3비상계엄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공직자 조사 TF²⁾ 운영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고,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하는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고³⁾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음.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총리실 산하 “헌법준중 정부혁신 총괄 TF”라는 명칭으로 2025년 11월 21일 공식 출범 → 기관별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구성 완료(총 48개의 기관별 TF)

3) SBS뉴스,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엔 “들여다보기만””, 2025. 11. 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29063)

③ 조사방법

-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既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 이와 관련하여 개인 소유 휴대전화는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의 성격으로서,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시 대기발령 등 사실상의 인사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⁵⁾.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둌으로써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감찰·감사·조사 등

4) 참고로, 헌법준중 정부혁신 TF의 추진 계획 중 디지털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SBS 보도내용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고,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지침과 관련, 이는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

(국무조정실, 「헌법준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2025. 11. 12.)

5) 연합뉴스, “헌법준중TF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방침에 “인권침해” 진정”, 2025. 11. 14.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4039000004>)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법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을 별도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통한 정보 확인 역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적법 처리 근거를 갖추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치를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⁶⁾, 감찰·감사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은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